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8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허 영 · 한민수
박용갑 · 김원이 · 위성곤
김영환 · 조정식 · 서영교
서영석 · 윤준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,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,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1조 및 제106

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43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1항 중 “기관”을 “기관,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”을 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감독 기관) ① 근로조건 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 <u>기관</u> 에 근 로감독관을 둔다.	제101조(감독 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<u>기관, 고용</u> <u>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</u> <u>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</u> <u>별자치도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 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<u>지방고용노동관</u> <u>서의 장</u> 에게 위임할 수 있다.	제106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방고용노동관</u> <u>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</u> <u>이 지정하는 특별시장 · 광역시</u> <u>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</u> <u>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.
<u><신 설></u>	② <u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</u> <u>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</u> <u>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 · 광역</u> <u>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</u> <u>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</u> <u>여야 한다.</u>